



사법행정자문회의 제3차 회의 회의록

2020. 1. 2.

운영지원단

I. 개요

- 일시: 2020. 1. 2.(목) 15:00~19:35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 참석자
 - 대법원장(의장)
 - 김순석, 박균성, 오승이, 윤준, 이광만, 이미경, 이찬희, 최한돈(이상 위원, 가나다 순)
 - 이한일(간사), 고원혁, 서현웅(이상 서기)
- 배석자
 - 서경환(법관인사 분과위원회)
 - 홍동기(운영지원단장), 김영훈, 강지웅, 한종환, 이인수, 유제민, 배진호(이상 운영 지원단원)

II. 의사개요

1. 대법원장(의장) 인사말씀 및 배석자 소개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업무를 시작하는 실질적인 새해 첫 날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위원님들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듭. 오늘로 시작되어 앞으로 계속될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사법행정에 관한 수평적 의사결정기구로서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훌륭하게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2020년 예산안 보고 및 분과위원회 관련 안건을 논의한 후, 법관 위원들만 남아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관련 안건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 대법원 예산 편성 보고

- 기획조정실장, 2020년 대법원 예산 편성 결과를 간략히 보고함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보고받으신 것처럼 생각보다 사법부의 예산 규모가 작지 않음. 물론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인건비이긴 하나, 인건비를 제외해도 예산액이 상당하여 걱정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3.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여부(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가. 기초발제

- 한종환 분과위원회 간사 기초발제
 -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에 관하여 1.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여부, 2. (설치 긍정 시) 필요한 사무공간 마련 방안과 그에 따른 울산원외재판부 시행 시기를 논의 쟁점으로 제시함

나.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들으신 바와 같이 분과위원회에서는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여부에 관하여는 긍정적이지만 설치 시기와 관련된 여러 변수가 있다고 검토를 하였음
 - 울산원외재판부가 설치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에는 모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게 되고, 지방법원 단위에서는 의정부에만 원외재판부가 없는 결과가 됨. 다만 아시시피 의정부지방법원의 청사 사정이 워낙 열악하여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정부지방법원 이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때에는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여부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음
- 의장은 위원들에게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물은바, 참석한 모든 위원이 찬성하였음
- 다음과 같은 의장의 발언과 질문 및 이에 대한 운영지원단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설치 여부에 대해 동의하신다면 시행 시기가 문제되는데, 시행 시기는 결국 공간 확보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 아시다시피 인천원외재판부를 설치했지만 추가 재판부 설치 공간이 없어 현재까지도 민사만 시행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인천 시에서는 형사재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실정임
- 보고한 사항과 같이 옥상을 증축하는 경우, 예산 편성 등 준비 절차를 거친 후 개원은 언제쯤 가능한지?
 - 운영지원단장(기획조정실장)
 - 올해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 내년 상반기에 증축 공사를 마치고 내년 9월에 개원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점임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관련 예산 확보가 늦어지거나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말씀하신 시점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발제자와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미경 위원
 - 자료집 11쪽에서 원외재판부 설치 시의 단점으로 지적된 ‘양형과 법령해석 통일 기능 저해’, ‘규모가 더 작은 지역에서의 원외재판부 설치 여론 분출 위험성’ 부분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는지 궁금함
 - 발제자
 - 이미 다른 지역에 원외재판부가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원외재판부를 설치하더라도 양형이나 법령해석의 통일 기능이 저해될 우려는 적고, 특히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미 양형기준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원외재판부와 관할 고등법원 간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양형 편차와 관련된 논의를 한다면 우려하신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검토하였음
 - 규모가 더 작은 지역에서의 원외재판부 설치 여론 문제와 관련해서는, 울산을 제외하고 지방법원 단위에서는 의정부에만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장기적으로 의정부에도 원외재판부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검토하였음
 - 의장



- 원외재판부는 부산고등법원의 재판부 일부가 울산지방법원에 설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원외재판부가 양형연구회 등을 통해 양형 통일 또는 법령해석과 관련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게 될 것임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최한돈 위원

- 울산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함
- 하지만 울산원외재판부가 설치되는 것을 전제했을 때, 의정부 및 서울 관내 동·남·북·서 지방법원을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는 현 시점에서 항소심을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을 나누어 2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의문이 듦. 국민의 사법접근성 제고 명목으로 계속해서 원외재판부를 확대하는 경우 대규모 지원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강릉지원의 경우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항소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대규모 지원에 항소부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국민의 사법접근성 차원에서 이러한 요구를 계속 수용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 2원적으로 운영되는 우리 항소심 구조 자체에 대해 재고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듦. 이제는 항소심 기능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함

○ 의장

- 최한돈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함
- 본인 역시 언젠가는 심급구조가 간략히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상고제도 개선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심급구조 개선을 검토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임
- 심급구조를 1심-2심-3심으로 단순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언젠가는 연구할 기회가 있을 것임

▣ 다음과 같은 이찬희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발제자의 답변이 있었음

○ 이찬희 위원

- 울산지방법원 12층 옥상 증축 방안의 단점으로 지적된, 단일사업으로 추진하기



에는 규모가 과소하여 사법부의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추가 증축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지방법원, 가정법원의 향후 예상치 못한 사무공간 수요에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음

○ 발제자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차 회의에서 승인된 중기사업계획에는 춘천지방법원 이전 신축, 의성지원 이전 신축, 충주지원 이전 신축 등 규모가 큰 사업이 많음.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의 총액은 물론 사업의 수 역시 고려하는데,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울산지방법원 옥상 증축으로 법원이 1년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수의 하나를 채워버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실무적인 우려가 있었음
- 다만 울산지방법원에서 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하여 옥상에 증축하는 방안으로 사업계획 자체를 변경하여 신청하였고, 그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옥상 증축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용한 방안이라는 것이 분과위원회의 검토 의견임
- 옥상 증축을 하는 경우 당장 사용할 2개 재판부 공간만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옥상 증축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관 신축 요청을 하는 것은 예산당국이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테니스장에 별관을 신축하여 울산가정법원이 독립 청사를 사용하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게 됨
-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울산지방법원이 어느 정도 고민을 하여 옥상 증축 방안을 신청한 점을 고려하였고, 또한 울산가정법원 독립 청사 사용은 울산가정법원 뿐만 아니라 전국 가정법원 전체의 독립 청사 추진방안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음

▣ 다음과 같은 이광만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간사의 답변이 있었음

○ 이광만 위원

- 옥상에 1개 층이 아닌 2개 층 이상의 증축은 불가능한 것인지? 또한 2014년 울산지방법원을 신축한 지 6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사무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의아함

○ 간사

- 기술적으로 1개 층만 증축 가능함



- 울산지방법원은 개원한 지 5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청사 신축 이후 울산 가정법원이 같은 청사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공간이 협소하게 된 사정이 있음

▣ 다음과 같은 이광만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간사의 답변이 있었음

- 법원 기능의 확대, 배석판사의 감소 및 부장판사의 증가에 따라 법원 청사의 신·증축에도 불구하고 사무공간은 계속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에서는 청사 구조 및 공간 배치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계신지?
- 예산당국과 협의가 필요하겠으나 의정부지방법원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원외재판부 설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지나 청사를 여유 있게 확보할 수 없는지?

○ 간사

- 법원의 업무공간이 계속해서 부족해지는 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에서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차 회의에서 부의한 법원청사 설계지침 변경 검토를 시작하였는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합리적인 사무실 배치를 통한 법관 및 법원직원의 공간 부족 해결 방안임
- 잘 아시다시피 예산당국이 요청을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 공간을 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다. 결정사항

- ▣ 울산지역 주민의 사법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 다만,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서는 사무공간 확보 등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므로, 위 문제가 실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법원공용차량 신규배정 및 업무용차량 교체 기준(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가. 기초발제

- ▣ 한중환 분과위원회 간사 기초발제



- 법원공용차량 현황 및 현행 기준을 소개하고, 분과위원회가 검토한 ‘업무용차량 신규배정 및 교체 기준표(안)’을 제시함

나.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제2차 회의에서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상의 차량교체 기준을 명확히 한 바 있으나,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모든 차량을 다 교체할 수는 없는 실정임. 지금까지 관련 지침 없이 법원행정처의 재량에 의해 공용차량을 교체하는 것에서 벗어나 한정된 예산 하에서 합리적으로 공용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자는 취지임

■ 위원들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안에 동의하였음

다. 결정사항

- 업무용차량의 신규배정·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원이 신설되어 차량이 필요한지 여부, 차량의 수리사용이 불가능한지 여부, 사고 차량이나 노후차량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수리비가 소요되는지 여부, 특정 법원에 배정된 업무용차량의 평균운행거리와 평균운행횟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서 신규배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교체 요청 대상 차량의 운행기간, 운행거리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음

5. 전용차량 개선방안

가. 법원행정처 담당자 기초보고

- 한종환 기획조정심의관, 전용차량 개선방안 논의의 필요성과 안전 부의 경과를 보고하고, 안전 회부 시 상정 가능한 구체적 논의사항과 향후 일정(안)을 제시함

나.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현재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을 하지 않고 직무대리 발령만 내고 있음.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



무대리에게는 전용차량을 배정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하는 고등부장의 수만큼 전용차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 검찰도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로 전용차량 배정 요건을 엄격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용차량 배정 기준에 관한 개선방법은 없는지, 배정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비록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나 전용차량 지급 대신 취할 수 있는 보완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단 전용차량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회부한다면 그 내용 및 검토 시한을 논의해주시면 되겠음. 3월 31일까지 전용차량 개선 방안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므로, 2월 말까지 분과위원회 검토를 마치고 3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정기회의에서 보고받는 일정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음. 이 부분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이찬희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검찰에서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지급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고등부장의 출퇴근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용차량을 유지하는 경우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
- 제안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등부장이 실제로 전용차량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전용차량을 폐지하는 경우 검찰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보상책이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분과위원회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오승이 위원
 - 이찬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함. 여론의 추이나 언론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전용차량 제도 개선을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함
 - 다만 직무성과금은 현재 배정기준에 대해서도 불만이 표출되는 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전용차량 제도 개선에 따른 보완조치로 직무성과금을 논의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보이고, 교통비, 직급보조비, 명예퇴직수당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의장

- 전용차량 폐지 시의 보완조치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직무성과금 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같은 구체적 방안까지 의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따라서 부의 안건 중 보완조치 부분은 부수적인 사항으로 논의될 것이라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이찬희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법원장의 경우 외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전용차량 이용의 필요성이 있으나, 재판만 하는 고등부장은 출퇴근 이외에는 전용차량을 사용할 일이 없으므로 모든 고등부장에게 전용차량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임
- 또한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보완조치 방안까지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이광만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이찬희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이광만 위원

- 전용차량 문제는 최근에 더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본인의 초임 때인 30년 전부터 고등부장판사 승진제도와 함께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음
-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들과 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그분들은 수십 년 전부터 대법원 규칙에 근거하여 고등부장에게 전용차량을 제공해 왔는데 지금에 이르러 특별한 보완조치 없이 전용차량 제공을 폐지하는 것은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06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음. 또한 검사와 계속 비교를 하는데 검사의 경우 헌법 제106조와 같은 규정도 없고, 검사는 정년의 제한만 받는 데 비해 법관은 정년은 물론 임기의 제한도 받기 때문에 고등부장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이 철폐된다 하더라도 법관의 경우에는 실제 받을 수 있는 명예퇴직수당이 거의 없고, 전용차량 폐지에 따른 보완조치를 위해서는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가 과연 제대로 될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음
- 연수원 25기 이후 기수부터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발령을 내지 않으므로 향후 전용차량을 제공받는 법관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 줄어든 만큼 지방법



원장 및 지방법원 수석부장에게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전용차량 문제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기 견연적인 측면이 있긴 한데, 실제 적용 대상이 되는 고등부장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음

○ 이찬희 위원

- 원래 제공받던 혜택이 중단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이광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를 하실 것 같음
- 말하고자 하는 점은 2가지임. 첫째로 검찰이 전용차량을 폐지하는 마당에 이광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논리로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문제임. 전용차량 폐지가 법관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을 주장하는 순간 여야를 불문하고 ‘법원은 검찰만큼 개혁적이지 못하다’는 공격을 받게 될 것임. 또 하나는 요즘 젊은 판사님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 ‘내가 열심히 일하면 훗날 전용차량을 제공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판사님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고등부장에게 제공하던 전용차량을 앞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수의 법관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임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다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몰라도, 전용차량 자체를 유지할 경우 언론은 물론 국회, 법원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본인 역시 고등부장인 입장에서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듦
- 분과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안을 만들고 시행을 하면 법원 내부적으로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분과위원회에 회부를 하여 논의를 진행하되, 설문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등부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책 또는 보완책을 만들면 문제해결을 위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고등부장이라고 하여 모두 전용차량 유지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임



■ 다음과 같은 박균성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고등부장의 전용차량 문제는, 고등부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 과연 전용차량이 과연 필요한지 그 필요성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사회 변화에 비추어 전용차량 유지 여부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폐지 후 공용차량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는 없을지에 대해서도 역시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함
- 예를 들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등부장이 겸임하고 있는데, 월 3회 정도 출장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차량이 필요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용차량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전용차량 폐지에 대하여 언젠가 한번 결단이 필요하고,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함

다. 결정사항

■ 전용차량 개선방안에 관한 안건을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함

■ 연구 검토를 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에 대한 전용차량 배정기준 유지 여부
- ② 위 전용차량 배정기준의 개선방안(구체적인 전용차량 배정기준안, 전용차량 배정기준 개선안 시행시기)
- ③ 위 전용차량 배정기준 개선에 따른 보완조치

■ 연구·검토 시한은 2020년 2월 말까지로 하고, 2020년 3월에 예정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4차 회의에서 보고받기로 함

6.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법원본부 의견’ 보고 및 논의

가. 보고

■ 간사,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전국공무원노동조



합 법원본부 의견'을 보고함

나. 토론

※ 비공개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토론 내용을 기재하지 않음

다. 결정사항

- ▣ 분과위원회 설치 목적과 회부한 안건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원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필요가 있다는 종전 결정사항(사법행정자문회의 제2차 회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음
- ▣ 그 외 분과위원회 구성 방법에 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공모나 추천 결과를 확인한 뒤 분과위원회 설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모음

※ 16:20경 정회 (김순석, 박균성, 이미경, 이찬희 위원 이석)

※ 16:30경 속개

7. 2020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6개 보직인사안에 관한 논의(소관: 법관 인사 분과위원회)

※ 김영훈 인사총괄심의관, 이인수, 배진호 인사심의관, 서현웅 사무관(서기)을 제외한 배석자는 퇴장

가. 기초발제

- ▣ 서경환 분과위원장, 현장 배부한 별도 자료에 의하여 2020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6개 보직 인사안에 관한 연구·검토 결과를 보고함
- ①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② 현재 파견연구관 선발, ③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④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⑤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⑥ 고법판사 신규 보임

나. 논의사항

- ▣ 위 6개 보직인사안별로 각각의 선정기준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보임대상자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였음(구체적 보임대상자에 대한 자문의견 논의 시에는



인사상 비밀 유지 등을 위하여 실명을 배제하고 익명으로 논의를 진행함)

8.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3차 회의록 작성시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의견’에 대한 위원들의 토론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의결함

III. 다음 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4차 회의(정기회의)

- 일시: 2020. 3. 12.(목) 10:00
- 장소: 대법원

(끝)